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6.09.23.)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규정을 따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 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숭의역노르웨이숲더스카이.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시	2026.09.28.(월)	2026.10.06.(화) 16:00이후	2026.10.07.(수)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31959호(2026.09.22.)로 분양신고

■ 본건축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주택관리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을 통해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6,984.3000㎡ 중 오피스텔 지분 1814.4181㎡**
- **건축물 연면적 : 총 연면적 80,499.1647㎡ 중 오피스텔 20,533.9408㎡**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5층~지하1층(주차장, 전기실 등), 지상1층~2층(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지상 3층(PIT), 지상4층~지상40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40층 1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108실**
- **주차대수 : 업무시설(오피스텔) 127대**

■ 건축물 대지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 일반상업지역(2025-12-08),방화지구
-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내진설계 등급 : 내진등급 Ⅰ / 내진능력(MMI등급) Ⅶ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자의 명칭 – 분양사업자 : 숭의역2단지지역주택조합 / 시공자 : ㈜유림E&C / 분양대행사 : (주)로건홀딩스

■ 분양대금의 관리자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숭의역2단지지역주택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30년 05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실, ㎡)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84OA	72	84.6525	41.0838	125.7363	64.5325	190.2688	16.7871
84OB	36	84.8507	40.3153	125.1660	64.6836	189.8496	16.8264
계	108	-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또는 면적(㎡)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VAT 포함)

타입	동 (라인)	층	공급 호실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 (50%)					잔금 (45%)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7-03-12	2027-07-12	2027-12-12	2028-12-12	2029-03-12	입주시
84OA	104동 1호,3호	4층	2	93,734,793	318,068,370	31,806,837	443,610,000	5,000,000	17,180,500	44,361,000	44,361,000	44,361,000	44,361,000	44,361,000	199,624,500
		5층	2	95,727,352	324,829,680	32,482,968	453,040,000	5,000,000	17,652,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203,868,000
		6~10층	10	97,711,459	331,562,310	33,156,231	462,430,000	5,000,000	18,121,500	46,243,000	46,243,000	46,243,000	46,243,000	46,243,000	208,093,500
		11~20층	20	99,706,131	338,330,790	33,833,079	471,870,000	5,000,000	18,593,500	47,187,000	47,187,000	47,187,000	47,187,000	47,187,000	212,341,500
		22~29층	16	101,698,690	345,092,100	34,509,210	481,300,000	5,000,000	19,065,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216,585,000
		30~35층	12	102,696,026	348,476,340	34,847,634	486,020,000	5,000,000	19,301,000	48,602,000	48,602,000	48,602,000	48,602,000	48,602,000	218,709,000
		36~40층	10	103,693,362	351,860,580	35,186,058	490,740,000	5,000,000	19,537,000	49,074,000	49,074,000	49,074,000	49,074,000	49,074,000	220,833,000
84OB	104동 2호	4층	1	91,421,058	310,217,220	31,021,722	432,660,000	5,000,000	16,633,000	43,266,000	43,266,000	43,266,000	43,266,000	43,266,000	194,697,000
		5층	1	93,367,131	316,820,790	31,682,079	441,870,000	5,000,000	17,093,500	44,187,000	44,187,000	44,187,000	44,187,000	44,187,000	198,841,500
		6~10층	5	95,323,769	323,460,210	32,346,021	451,130,000	5,000,000	17,556,500	45,113,000	45,113,000	45,113,000	45,113,000	45,113,000	203,008,500
		11~20층	10	97,267,729	330,056,610	33,005,661	460,330,000	5,000,000	18,016,500	46,033,000	46,033,000	46,033,000	46,033,000	46,033,000	207,148,500
		22~29층	8	99,213,802	336,660,180	33,666,018	469,540,000	5,000,000	18,477,000	46,954,000	46,954,000	46,954,000	46,954,000	46,954,000	211,293,000
		30~35층	6	100,185,782	339,958,380	33,995,838	474,140,000	5,000,000	18,707,000	47,414,000	47,414,000	47,414,000	47,414,000	47,414,000	213,363,000
		36~40층	5	101,159,875	343,263,750	34,326,375	478,750,000	5,000,000	18,937,500	47,875,000	47,875,000	47,875,000	47,875,000	47,875,000	215,437,5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는 본 사업부지가 포함된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관계 법령(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포함),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각종 인·허가 변경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오피스텔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전체 대지지분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으로 분할하였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확정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인천시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은 108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2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6.09.2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타입)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6.09.28.(월)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026.10.06.(화) 16:00 이후	2026.10.07.(수)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colspan="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9.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10.06.(화)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6.10.07.(수)	10:00~16:00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 계약자는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1107-021-926368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4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4-1001홍길동)**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1호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간 이전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공급(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금회 분양광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내 용
본인계약 시 (공통)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는 오피스텔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계약 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대표이사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오피스텔 계약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청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반드시 본 분양광고문 하단 '기타 유의사항' 의 단지 내·외부 및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타입 층, 호실의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별 납부일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호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당 사업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계약서 상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 가격(분양가격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1. 2024.01.01. 시행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1 또는2)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에 첨부
납부금액	1.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과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의 50% 범위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호실별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오피스텔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호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제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사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사, 시공자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자,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자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실 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추가 선택품목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수준(타사 제품 포함)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안내,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타일/엔지니어드스톤/마루/시트판넬 자재 등의 무늬 및 패턴은 불규칙하게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84OA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	거실+침실1(안방) (2개소)	4,800,000	480,000	4,320,000	LG전자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8,000,000	800,000	7,200,000	
84OB		거실+침실1(안방) (2개소)	5,500,000	550,000	4,950,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8,600,000	860,000	7,740,000	

※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LG 일반형 제품이며,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추가 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 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용 냉난방 실내기가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으며 제품의 디자인 및 규격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옵션 품목의 계약 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 사항이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옵션 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 매립배관 및 연결용 매립박스가 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냉매 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냉매 매립배관 등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제시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내 냉매 매립배관, 배관연결구 및 전기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스위치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의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근접한 실내로 진동 등 운전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84OA, 84OB	인덕션(3구)	주방	1,070,000	107,000	963,000	* 삼성전자 NZ63B5056AK *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84OA, 84OB	빌트인 식기세척기 (12인용)	주방	1,100,000	110,000	990,000	* 삼성전자 DW80F71Y1SEW *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와 내부선반으로 시공됩니다.
84OA, 84OB	비스포크 4도어냉장고 + 비스포크 3도어김치냉장고 + 키큰서랍장	주방	5,500,000	550,000	4,950,000	* 4도어 : 삼성전자 RM70F63R2A * 3도어 : 삼성전자 RQ33DB74E1AP * 미선택 시, 냉장고장은 오픈형 냉장고장 2개소(상부수납형태)만 시공되며, 키큰서랍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84OA, 84OB	스마트 복합 환풍기	욕실1+욕실2	1,100,000	110,000	990,000	* 힘펠 휴젠트 루미 FHD3-C150P_MT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수준(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옵션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이 설치됨에 따라 시공되지 않는 기본품목의 감소되는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냉장고장 선택품목 옵션금액은 냉장고 외 추가로 시공되는 키큰서랍장 설치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스마트 복합 환풍기 선택품목 옵션선택 시, 기본 시공되는 환풍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각각의 설치위치는 상이합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는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며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3)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84OA	광폭마루(395*795*7.5T)	거실,주방,복도 바닥	520,000	52,000	468,000	* 미선택 시, 95*800*7.5T 규격의 목무늬 마루가 설치됩니다.
84OB			520,000	52,000	468,000	
84OA	3연동 슬라이딩도어	현관 중문	1,200,000	120,000	1,080,000	* 현관 중문 설치 공간의 신발장 규격이 축소되어 시공됩니다.

						* 디딤판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84OB	원 슬라이딩도어		1,000,000	100,000	900,000	* 디딤판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84OA	아트월 타일(600*1200)	거실 벽	250,000	25,000	225,000	* 미선택 시, 기본 타일 마감(400*800) 으로 시공됩니다.
84OB			230,000	23,000	207,000	
84OA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 벽체	2,500,000	250,000	2,25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 (300*600)로 마감됩니다.
84OB			2,400,000	240,000	2,160,000	
84OA	벽판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중문	드레스룸 + 파우더룸	1,700,000	170,000	1,530,000	* 미선택 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은 벽체로 구획, 가구형 도어가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벽체는 기본 도배마감으로 시공되며, 드레스룸에는 포스트형 시스템행거, 파우더룸에는 화장대가 설치됩니다.
84OB			2,600,000	260,000	2,340,000	
84OA	붙박이장	침실2	1,250,000	125,000	1,125,000	* 미선택 시, 침실로써 벽체는 기본 도배마감으로 시공되며, 가구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84OB			1,250,000	125,000	1,125,000	
84OA		침실3	1,400,000	140,000	1,260,000	
84OB			1,350,000	135,000	1,215,000	
84OA, 84OB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욕실2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욕실1(공용) : 기본형 양변기(대림통상) 욕실2(부부) : 기본형 양변기(대림통상) + 비데가 설치됩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수준(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걸레받이,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선택품목 옵션은 벽판넬 시스템가구(드레스룸+파우더룸 통합, 벽판넬, 조명유리선반, 화장대, 각종 악세사리 등 포함) + 슬라이딩 중문 설치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비데일체형양변기 옵션 선택시 기본형에서 제공되는 일반 비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옵션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이 설치됨에 따라 시공되지 않는 기본품목의 감소되는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926380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추가 선택품목 대금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확인증 등)을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약정 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5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30년05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 또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물 공사 중 자연재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노동조합의 파업 및 태업, 원자재 수급불균형,,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 지연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후 납부 시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유보된 50% 금액을 입주일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 시공자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 상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오피스텔 계약자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숭의역2단지지역주택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본사항**

- 오피스텔 단지배치 및 층, 향, 호수별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O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라인에 따라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
- 공급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호실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까지 표시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할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대지지분을 제외한 계약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도로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정산 처리되며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지하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계약자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기둥, 보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4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4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과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사전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에 표현된 입면은 실시공 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관계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실내 무단출입 및 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최초 분양광고 공고 전 배포된 홍보물 또는 사업주체에서 배포하지 않은 홍보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관련 사항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광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뒤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 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창문손잡이, 부속철물, 유리사양,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주변환경, 제연휀룸 및 휀룸용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차,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와 출입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모형 및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 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현관문, 도어 및 점검구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실내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사양 및 위치, 환기 디퓨져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관련 사항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단지 내·외부 관련사항

•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되는 복합 건축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동간 거리가 좁고 배치가 밀집되어 일부 호실은 일조량이 현저히 적을 수 있음. 또한, 인접지역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빛공해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자도로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거 나 폐쇄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반시설의 미완료로 인한 당사업지의 정식 사용승인이 아닌 동별준공, 또는 임시사용 등이 불가피할 경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 및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 선형, 레벨 등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 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 해당부지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단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본공사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거실, 침실에 기둥 또는 벽이 위치하며 그에 따른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도·홍보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천장고는 거실/침실기준 2,300mm로 설계되었으며 우물천장 설치 및 옵션 평면선택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천장고 및 실별 바닥 단차는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동조합의 위치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호실 및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호실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 세면대 선반 하부에는 합성보드,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붙박이장 가구 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천장 상부 가려지는 부위는 벽체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별 현관문 및 방화문, 점검도어, 핸드레일,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벽 등 기타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실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호실을 목업호실로 지정하여 샘플 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 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관리실, 우편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불법구조 변경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색채, 상가의 내부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및 타 시설의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 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위치 및 문(출입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 포함)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근린생활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진출입구, 음식물쓰레기보관소,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옥외 소방시설물인 옥외상수도소화전, 연결송수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호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하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지하 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진입 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 여건에 따라 각 구간별 인접한 주차대 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차차단기(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층고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수량 및 종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됩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노동조합의 파업 및 태업, 원자재 수급불균형,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조경시설물 및 사업지내 보행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배기휀 등 공용 기기의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부지에 한전 스위치와 변압기 박스 및 도시가스 정압실이 설치되며, 각종 인입(상·하·오수·지역난방·도시가스·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수도미터기, 가스미터기)은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소방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부지내 인입된 상수도, 도시가스 시설물의 점검 및 계량을 위한 맨홀이 설치됨에 따라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부지 여건에 따라 관할 관청의 협의를 통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설치되는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됨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설치 위치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지하5층, 지하4층 104동 인근 정화조 및 정화조 관리층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정화조 환기를 위한 덕트는 오피스텔 104동의 정화조 전용 별도 공간을 통하여 해당동 옥탑3층을 통해 배출될 예정이며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의 설치는 해당 사업부지 외부 토목 기반시설 관로 기준에 맞춰 허가된 사항으로 정화조 설치로 인한 환경권, 소음피해, 악취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지하5층, 지하4층 101동 인근 물탱크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지하3층, 지하2층 101동 인근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지하3층, 지하2층 104동 인근 소화저수조 및 소화펌프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지하5층, 지하4층 103동 인근 우수저수조 및 저수조펌프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5층~지하1층 전층에 제연휀룸 및 휀룸 급,배기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지하2층, 지하1층에 창고 및 폐기물보관창고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3층~지하1층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됩니다.
• 지상1층~2층 및 단지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혼재하며 이로 인한 동선의 불편함,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관리실, 방재실, 주민회의실,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경비실, 공개공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103동 인근 주거 및 비주거 폐기물 및 음식물 보관창고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및 경로당, 라운지 카페, 주민회의실, 세탁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실외기실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 어린이놀이터, 소화수조, 펌프실, 휀룸실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21층 휀룸실, 피난안전구역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층에는 소방전용 물탱크 및 펌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 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 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갑 등"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우수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공시 호실별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 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조경석,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 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공고 이전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 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호실은 인접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상가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명칭, 호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외부상세계획,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형태로 인해 각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환기 불리,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견본주택상의 단지 모형 등의 홍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 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오·배수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실에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호실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결정되며, 관계법규 에 의거하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설비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E.V홀, 계단실 채광창은 개폐가 불가능한 창호로 시공됨. 단, 계단실은 5개층마다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창호를 설치하며 개폐창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저층(1층~3층) 공용부 및 부대시설의 비내력벽인 조적벽체는 높은 층고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를 건식벽체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수위에 의한 부력방지 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고 영구배수 집수정을 설치합니다.
• 지하주차장 용도별 주차구역이 지하1층은 오피스텔 및 상가용, 지하2층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용, 지하3층~지하5층은 공동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차량출입 관련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로 높이는 2.7m로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지하5층 2.3m로 시공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에 한해 이용이 가능함.

■ 단위실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내 건립되는 오피스텔은 84OA타입이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실 모형 또는 카다로그를 참고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와는 달리 구조변경(확장 등), 난방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 내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내 침실1 창문은 소방관 진입창으로 유리에 표식이 설치되며, 침실2 창문은 배연창으로 배연창치가 설치되어 창문 손잡이는 설치되지 않고 개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적하여 개폐하여야 합니다..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 설치되는 현관, 창고, 점검구 등의 도어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실제 시공시 브랜드, 재료,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호실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타일, 마루, 도배,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보일러, 수전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견본주택의 조명기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 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 내 통신단자함, 호실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4층, 5층, 최상층에 설치되는 동체감지기는 세대 내에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본 공사시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 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난방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호실별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 환기팬,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노출되며, 가구장 일부를 배관 공간으로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또한 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호실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에는 상부층 급수.급탕을 위한 분배기 및 배수배관이 설치되므로 유지관리용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규격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각 호실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소방설비,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상부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수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모든 호실의 주방배기, 욕실배기는 직배기 방식이 적용되며 주위 환경 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화재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각 호실 전층의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일부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세면대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 및 주방가구, 일반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바닥 배수를 위한 배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각 호실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발코니 난간대는 철제 난간대로 설치되며, 주방창에는 별도의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평면계획에 따라 거실 및 침실구간에 발코니가 없고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자	전기감리자	소방감리자	통신감리자
회사명	㈜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금액	3,042,402,900원	722,456,000원	284,900,000원	748,0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보증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26-104-0000600 호	₩28,063,106,500원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 중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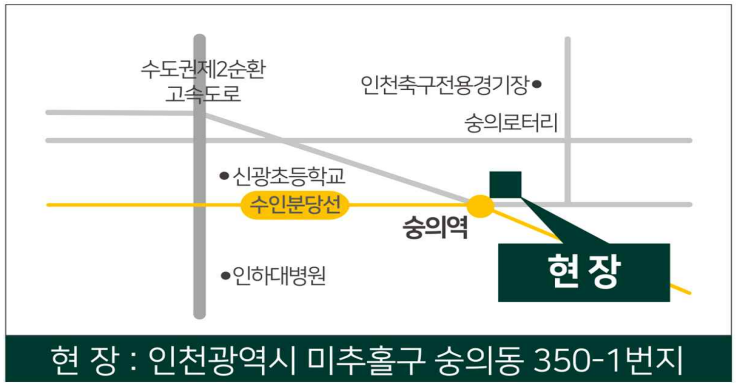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사업시행자)	시공사
상호	숭의역2단지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유림E&C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8, 502호 (사동, 경신빌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7, 지하1층 101호 (전포동, 서면더블루에스 지하1층)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07-82-74804	180111-0635855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오피스텔 84OA·84OB 108실	분양문의 1661-4229
	■ 분양홈페이지 : https://숭의역노르웨이숲더스카이.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 견본주택 운영시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